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712호 2026. 6. 1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60호)
- 예천 군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6-61호)

공 고

-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6-921호)

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(개간) 시행계획
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예 천 군 수

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- 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(개간)	예천	지보	도장	산21-1	3,077	(당초) 2024.08.05. ~ 2026.04.30. (변경) 2024.08.05. ~ 2027.04.30.	47,999	정 대 *

예천 군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고시

지보면 마산리 일원의 비룡산 전망대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(공원, 공원조성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예 천 군 수

1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공간시설 : 공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비룡산 전망대공원	문화공원	지보면 마산리	19,100	증) 725	19,825	예천군고시 제2022-1호 (2022.1.6.)	경미한 변경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 원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비룡산 전망대공원	공원 구역 변경 -A = 19,100㎡ → 19,825㎡ (증:725㎡)	기 결정된 비룡산 전망대공원의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

2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총괄표

구분		부지면적 (㎡)		시설면적 (㎡)		건축물				공작물 (기)	비고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동수 (동)	바닥면적(㎡)		연면적(㎡)			
							기정	변경	기정			변경
계		19,100	19,825	7,078	6,925	1	350	321.24	1,450	1,447.92	-	
기 반 시 설	소 계	2,798	4,384	2,798	4,384	-	-	-	-	-	-	
	도 로	2,798	4,384	2,798	4,384	-	-	-	-	-	-	
편 익 시 설		4,280	2,541	4,280	2,541	1	350	321.24	1,450	1,447.92	-	지상 4층
녹 지		12,022	12,900	-	-	-	-	-	-	-	-	
공원시설률 (법정제한없음)		6,925 / 19,825 x 100 = 34.9%										
공원건폐율 (법정 20%이하)		321.24 / 19,825 x 100 = 1.6%										

나. 세부시설조서

구 분	시설명		부호	위치	부지면적 (㎡)		시설면적 (㎡)		구조	규모 (동)	건축물				공작물 (기)	비고
	기정	변경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바닥면적(㎡)		연면적(㎡)			
							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	합 계				19,100	19,825	7,078	6,925	-	1	350	321.24	1,450	1,447.92		
기 반 시 설	소 계				2,798	4,384	2,798	4,384	-	-	-	-	-	-	-	
	도 로			전지역	2,798	4,384	2,798	4,384	-	-	-	-	-	-	-	
편 의 시 설	소 계				4,280	2,541	4,280	2,541	-	1	350	321.24	1,450	1,447.92	-	
	전망대	전망대, 휴게음 식점	1-1	마산리 산113-1일원	4,165	2,487	4,165	2,487	-	1	350	321.24	1,450	1,447.92	-	
	주차장		1-2	마산리 산113-7 일원	115	54	115	54	-	-	-	-	-	-	-	
녹지				전지역	12,022	12,900	-	-	-	-	-	-	-	-	-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도로	• 면적 변경 A = 2,798㎡ → 4,384㎡ (증 1,586㎡)	• 전망대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면적 증가
1-1	전망대, 휴게 음식점	• 시설명 추가 및 면적 변경 A = 4,165㎡ → 2,487㎡ (감 1,678㎡)	•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전망대 내 휴게음식점 추가 및 면적 감소
1-2	주차장	• 위치이동 및 면적 변경 A = 115㎡ → 54㎡ (감 61㎡)	•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위치이동 및 면적 감소
-	녹지	• 면적 변경 A = 12,022㎡ → 12,900㎡ (증 878㎡)	•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

다. 도로조서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연장(m)	면적(㎡)	기능	기점	종점	비고
기정	합계	2개 노선			815	2,798				
변경					952	4,384				
기정	소로	3	1	3	67	435	진입도로	마산리 산113-1	마산리 산113-1	
변경	소로	3	1	7~15	200	2,009	진입도로	마산리 산113-1	마산리 산113-1	
기정	소로	3	2	2~6	748	2,363	산책로	마산리 966-1	마산리 산113-1	
변경	소로	3	2	2~6	752	2,375	산책로	마산리 966-1	마산리 산113-1	

■ 변경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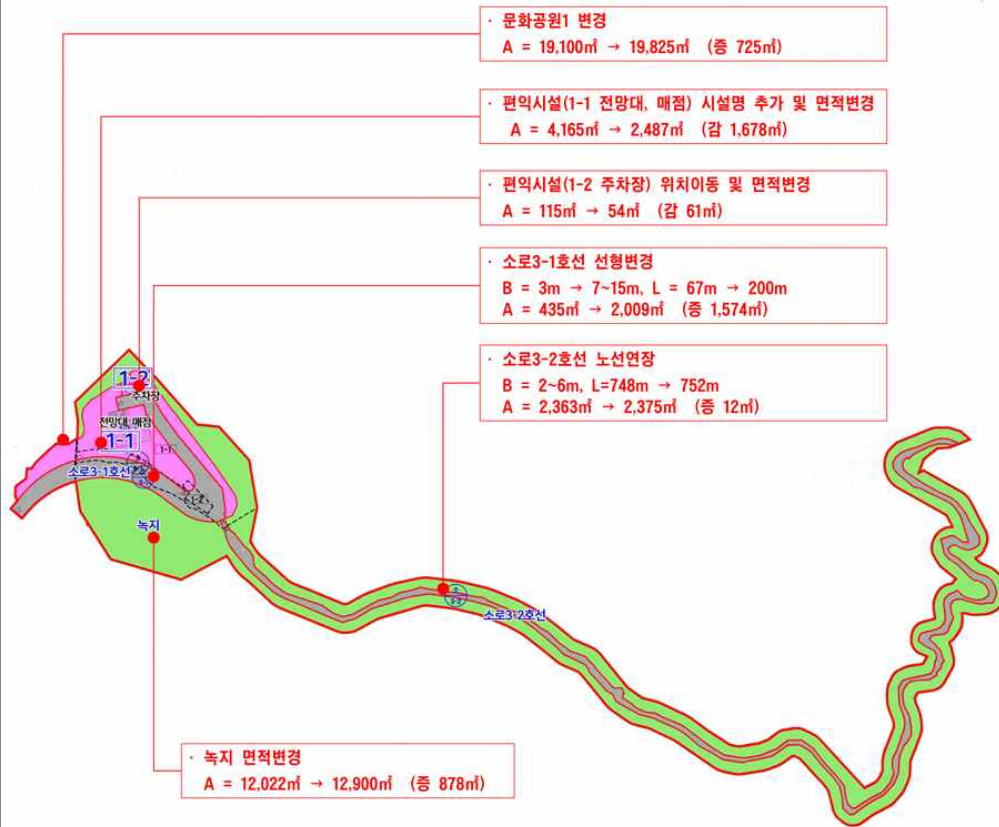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1	소로3-1	선형변경 B = 3m → 7~15m, L = 67m → 200m, A = 435㎡ → 2,009㎡ (증 1,574㎡)	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
소로3-2	소로3-2	노선연장 B = 2~6m, L = 748m → 752m, A = 2,363㎡ → 2,375㎡ (증 12㎡)	소로 3-1호선 변경에 따른 노선연장

2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 및 지형도면 등 : 게재 생략

※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그 외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함

3.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 및 문화관광과 (☎054-650-6908)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.

[참고]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



■ 조성계획총괄표

구 분	번 호	시 설 명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총 합	계		19,100	증) 725	19,825	100.0	
시 설	총 계		7,078	감) 153	6,925	34.9	
도 로	소 계		2,798	증) 1,586	4,384	22.1	
	소로3-1	진입도로	435	증) 1,574	2,009		
	소로3-2	산책로	2,363	증) 12	2,375		
	소 계		4,280	감) 1,739	2,541	12.8	
편 의 시 설	1-1	전망대, 매점	4,165	감) 1,678	2,487		건축물 1동
	1-2	주차장	115	감) 61	54		
	녹 지 총 계		12,022	증) 878	12,900	65.1	
녹 지			12,022	증) 878	12,900		

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부서별 조례·규칙 제·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총괄부서의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, 출력물에 대한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책 수립 시 사전검토 의무화(안 제6조의2)

나.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(안 제11조의2)

○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는 사항

○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록관리 및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

다.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(안 제15조)

○ 중복 문구 삭제를 통한 조문 명확화

라.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보완(안 제16조)

○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근거 마련

4. 개정조례안

○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홍보소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hyogun12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홍보소통과

3) 팩스 : 054-650-606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홍보소통과(전화: 054-650-607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 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검토) ①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각 부서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적법성 및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
2.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성 및 필요성
3.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서식의 적정성
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취급자”라 한다)”를 “개인정보취급자”로 한다.

제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검토) ①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각 부서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의 적법성 및 최소 수집 원칙 준수 여부</u> <u>2.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명확성 및 필요성</u> <u>3.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동의서 서식의 적정성</u> <u>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제8조(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)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15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

③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) ① -----
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
제15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

리 및 교육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이하 “개인정보취급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6조(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)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(생략)

리 및 교육) ① -----

-----개인정보취급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)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